

# 2022년 귀속 「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」 제출 안내

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, 시장조사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(“외국법인 연락사무소”)를 국내에 두고 있는 경우 올해부터 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「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」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(법인세법 §94의2, 동법 시행령 §133의2)

## <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>

### □ 「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」 제출 대상

-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업무연락, 시장조사 등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하는 “사무소”(법인세법 §94의2 및 외국환거래규정 9-32)
  - \* 비거주자(외국법인)가 국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설치신고(외국환거래규정 9-33) 및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 발급(법인령 §154)

### □ 제출 기한

- 제출대상기간(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)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 
예) 2022.1월1일 ~ 12월31일까지의 현황자료를 2023년 2월 10일까지 신고

### □ 제출 내용

- 연락사무소의 기본사항,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거래 및 국내투자 현황 등

### □ 제출 방법

- 흠택스의 신고/납부>일반신고>「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신고」에서 전자신고하거나,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
- ◆ 「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신고」제도와 관련한 서식 등 세부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([www.nts.go.kr](http://www.nts.go.kr)>국세정책/제도 > 국제조세정보 > 주요서식 >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 「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」 전자제출 방법

- ▷ 국세청 홈택스([www.hometax.go.kr](http://www.hometax.go.kr)) 접속하여, 법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메인화면 신고/납부>일반신고>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작성하여 제출

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website's main menu with tabs for 조회/발급, 민원증명, 신청/제출, 신고/납부, 상담/제보, 세무대리/납세관리, and a search bar. The '신고/납부' tab is active. Below it, the 'General Declaration' (일반신고) section is expanded, showing various tax categories like Income Tax, Business Tax, etc. A specific item, 'Declaration for Foreign Branches of Enterprises' (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신고),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.

The screenshot shows the 'General Declaration' (일반신고) page for 'Declaration for Foreign Branches of Enterprises'. It includes a summary table with columns for Step 1 (General Declaration), Step 2 (Declaration Content), and Step 3 (Declaration Submission). The table lists items such as 'STEP 01. 일반신고 (신고안내 및 신고서 작성 제출단계입니다.)', '해당 신고기한 내 여러 번 신고를 하는 경우 최종 신고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', '신고 후 접수증의 접수결과(정상)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', and '접수증 및 신고요약정보는 [STEP 02 제출내역]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'.